

朝鮮後期 濟州地方 田畝賣買文記의 研究 (I)

高 昌 錫*

— 〈차 례〉 —

- I. 머리말
- II. 資料의 整理와 解説
- III. 結論 - 綜合的 分析 -

I. 머리말

이 글은 한림읍 수岳리에 거주하고 있는 水山姜氏 宗家에 소장된 田畝賣買 文記 56건¹⁾ 을 정리한 것이다.

수산강씨 집안은 進勇校尉職에 있던 姜哲의 入島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는 朝鮮朝 中宗 10년(1515) 경에 湖南援兵²⁾ 으로 濟州島에 들어왔다가 복무 기간이 끝나자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제주에 정착한 것이다. 그러나 정착지는 상세히 전해지지 않고 있다. 다만 入島祖의 손자가 되는 姜禹會에 이르러서 지금의 涯月邑 水山里로 移住하였으며, 이 때문에 居住地名을 따라 이른바 水山姜氏라는 本貫이 생겼다. 그 뒤 姜應善에 와서는 水流川里, 즉 지금의 한림읍 明月里 下洞으로 거주지를 옮겼으며, 지금은 島內 각 처에 分散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전답 매매문기는 주로 入島 초반기의 수산강씨 집

* 제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 1) 이들 田畝賣買文記에 대해서는 1998년 5월에 日本 東京의 古今書院에서 발간한 『地理』 43-5호(pp. 37~43.)에 「朝鮮王朝時代의 濟州島での 土地賣買」란 제목으로 자료 없이 내용만을 소개한 바 있다.
- 2) 濟州島에는 朝鮮朝 中宗 7년(1512)부터 光海君 12년(1620)까지 약 백여년간 湖南援兵이 들어와 근무한 적이 있었다.

안의 生活史가 될 뿐 아니라 당시 제주 서북 지역의 社會經濟相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 하겠다.

이 글에서는 먼저 관계 자료를 시대순으로 정리한 뒤, 文記에 대한 解說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것이며, 그 다음으로 자료를 통해 나타난 田畚取得의 經緯, 田畚放賣의 原因, 재배 작물의 종류와 전답의 면적 및 賣買價 등을 結論을 통해 종합적으로 分析될 것이다. 이는 필자가 제주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전답문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는 목적과 부합되기 때문이며, 또한 필자의 기존의 研究物과도 상관되는 내용이 될 것이다. 자료 중 []은 誤字를 바로잡은 것이고, ()은 탈락된 글자, < >은 누락된 글자를 복원해 본 것이다. 그리고 해설 내용에서는 四標의 내용과 末尾의 套式이 생략되었다.

II. 資料의 整理와 解說

(1) 萬曆貳拾伍年 丁酉 拾壹月拾柒日 姜應善前明文 (34cm×43cm)

右明文事段 地字國馬督促時 矣身以備納不得是白去乙 女恩孟家累年率居 使喚役價以 金水川員下畚 租種捌升付只 四標段 東邊水路·南奴春伯·西安國己田·北同人畚四標 及里內員 皮牟肆斗付只 四標段 東路·南西奴阜孫田同員 皮牟拾斗付只 四標段 <東>奴丹千·南安國己·西小路·北高德弘 爲等如四標 及家坐代田 內外并 麻子貳升付只 四標段 東北小路·南金安泉田·西奴丹千田 壹斗浮鼎壹等乙 同姜應善亦中 放賣爲遣 同色馬納點次以 騶左耳穴右耳裂兩鼻裂雌馬禾一乙 買得納官爲遣 同田庫等乙 永永放賣爲去乎 後次吾矣族屬中 相爭爲行人有去等 此文記內乙用良 告官辨正爲乎事

田畚主 良女 恩孟(右手寸)
 訂 人 牧子 奴 三孫(左手寸)
 訂 人 婢 三德(右手寸)
 訂 人 群頭 奴 夫義(手 決)
 筆 執 金世(手 決)

이 明文은 萬曆 25년 丁酉, 즉 宣祖 30년(1597) 11월 17일에 田畚主人 良女

朝鮮後期 田畝賣買文記의 研究

恩誼가 姜應善에게 토지를 매도하면서 작성해 준 것이다. 地字國馬³⁾를 독촉할 때에 이 몸이 마련하여 납부하지 못하였으므로, 女人인 나 恩誼가 집에 여러 해 데리고 살면서 부린 몸값으로, 金水川員 下畝[알논] 租種 8되 부치기, 里內員[거리왓, 거림팻]의 皮牟 4말 부치기, 같은 地境의 皮牟 10말부치기와 家坐代(堡)田[집터왓] 안팎을 합쳐 麻子 2되 부치기 및 1말들이 뜯숯[浮鼎] 1坐

3) 『耽羅志』 牧養條에 의하면, 당시 제주도의 馬場은 濟州牧이 7場 38字(千字文 순으로 표시됨), 旌義縣이 3장 17자, 大靜縣이 1장 3자로, 총계 11장 58자로 기록되어 있다. 이를 다시 『南宦博物』 誌馬牛條를 통해 살펴보면, 제주도의 목장은 63개소 58자로 기록되어 있어, 목장의 수는 불어났으나 말에 烙印하는 글자의 수, 즉 馬屯의 수효는 변함이 없었다. 『南宦博物』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濟州	第一所	天·地·玄·黃·宇·宙·出	7字		
	別牧場	天·地	2자	別防所	소속
	第二所	洪·荒·月·盈	4자	朝天所	소속
		日·吳	2자	禾北所	소속
		結	1자		
	第三所	辰·宿·致·雨·露	5자		
	大三所	爲·麗	2자	涯月所	소속
第四所	張·寒·來·暑	4자			
大一所	往·秋·收·冬·藏·閏·霜·金·生	9자	明月所	소속	
大靜		玄·黃·宇	3자	攀瑟所	소속
		列·別玄(別玄은 두 자로 된 屯名)	2자	遮歸所	소속
旌義	第一所	李·柰·芥·薑·海·河·淡	7자		
	第二所	鱗·潛·羽·翔	4자		
	第三所	龍·師·火	3자	首山所	소속
榮·重·謹		3자	西歸所	소속	
山屯 牛島				監牧官	소속
				別防所	소속

등을 姜應善에게 팔고 同色馬⁴⁾를 점검할 때에 바칠 양으로, 왼쪽 컷구멍과 오른쪽 귀 및 두 코를 벤 驢雌馬 한살배기를 買得하여 官에 바치고 그 밭들을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地字國馬 즉, 말에 '地'字가 烙印되는 馬屯의 故失馬를 同色馬로 변상하기 위한 것이 토지방매의 사유이다. 그러나 본 문기 내용만으로는 國馬, 즉 동색마의 납부 대상자가 누구인 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所志 내용이 참고된다.

哨官 姜姬載 (手決, 26cm×37cm)

右謹言所志矣段 牛屯里居故良女恩孟亦 地字牧子奴三孫乙 率居使喚時 同色馬 督促乙仍于 里以西邊金水川員 租種八升付只畜 及家坐代田內外 并麻子二升付

- 4) 牧子は 자신이 기르던 馬匹이 致死했을 경우에, 그 증거로 가죽을 벗겨서 官에 바치게 되는데, 이 때 官에서는 馬籍에 올라 있는 것과 대조하여 毛色이 같을 경우에만 받아들이며, 이를 故失馬(事故馬)로 처리한다. 그러나 毛色이 틀리거나 毛皮에 損傷이 있을 경우에는 되돌려서 받지 아니하고 그 댓가로 牧子들에게 같은 색깔의 말을 징수하는데, 이를 同色馬라 하였다. 李健의 『濟州風土記』에는 동색마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풀이한 내용임).

“섬 안의 國馬는 여러 곳에 놓아 기르는데 兩縣(大靜 旌義)도 또한 그러하다. 馬屯이 매우 많아서 天地玄黃으로 글자를 배정하여 屯名을 붙인다. 한 屯의 말은 적어도 백여 필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으나 牧子は 많아도 2,3인에 불과하다. 이른바 목자는 말을 받아서 이를 관리하며 기르는 자이다. 여름과 가을의 풀이 자랄 때에는 말들이 죽어 쓰러질 염려가 없으나 嚴冬이나 초봄과 같이 풀이 말라 죽을 때에는 말들이 굶어서 죽는 숫자를 이루 다 셀 수가 없다. 만일 致死한 말이 있을 경우에는 목자는 즉시 가죽을 벗겨서 官에 바치는데, 이 때 官에서는 馬籍과 가죽을 참고하여 毛色이 서로 부합된 뒤에야 곧 그 가죽을 받아서 故失馬(事故馬)로 마적에 올린다. 혹 毛色이 틀리거나 毛皮에 損傷이 있을 경우에는 물리쳐서 받지 아니하고 즉시 같은 색깔의 말을 목자에게 징수하는데 이를 同色馬라 한다. 목자는 너털너털 해진 옷을 입은 사람으로 변상할 말을 살 때에는 힘이 미치지 못하여 자신의 말과 農牛를 다 팔아버리며, 이것도 부족하여 釜鼎과 農器와 같은 물건들을 모조리 팔아서 겨우 사 바친 뒤에 말이 만일 또 斃死하면 또 이와 같이 하여 5,6필 내지 10여 필에 이른다. 備納하는 자가 이미 그 힘이 다하여 어찌할 수 없게 되면 官家에서는 그의 遠近一族을 뽑아내어 변상할 말을 나누어 배정하여 徵納케 하는데 그 役이 참으로 괴롭다. 한번 이 任을 거치면 破産하지 않는 자가 없으니, 그 원통함을 호소하며 근심하고 탄식하는 모습은 참아 볼 수가 없다. 도랑에 넘어지고 골짜기에 쓰러져 죽는 말이 있음에 이르러서는 그 族屬된 자도 역시 그 징납을 이겨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 목자를 죽여서 모면하고자 하는 자도 간혹 있기 마련인 것이다.”

朝鮮後期 田畚買賣文記의 研究

只 及同員 牟十斗付只等田畚乙 矣祖父亦中許給 駟左耳穴右耳裂兩鼻裂今生雌馬一匹 買得成文後 同色納官爲白有去乙 校生梁以洽亦 不干私奴仲良稱名人亦中 虛稱買得 奪畊悶望叱分不喻 上年分 田畚買賣事 奴婢買賣一樣官斜 本文記背爻周 未事目是白乎等以 兩邊本文記 眼前取納辨正後 他矣有文券田庫 盜賣之罪乙 依法重治後 棘食望良白去乎 分揀立旨爲白只爲 行下向教是事

牧官 處分 辛丑十一月 日

官(押) (題辭) 「推閱處決次以捉來事 廿二」

이 所志는 辛丑年(선조 34년, 1601) 11월에 哨官 姜姬載가 牧官의 處分을 바라면서 官府에 올렸던 것으로, 내용은 “哨官 姜姬載가 삼가 所志를 말씀드리 는 것은 牛屯里(지금의 한림읍 上明里境)에 사는 故 良女 恩孟가 地字牧子 奴 三孫을 데리고 살면서 부릴 때, 同色馬를 독촉한 탓으로 마을 서쪽 金水川員 의 租種 8되 부치기 논과 家坐垆田 안팎을 합친 麻子 2되 부치기 및 같은 지 경의 牟[보리] 10말 부치기 등의 전답을 저의 祖父에게 넘겨 주고 왼쪽 컷구 명과 오른쪽 귀를 베고 두 코를 벤 駟雌馬 한 필을 매득하여 文記를 작성한 뒤 同色馬를 官에 납부하였는데, 校生 梁以洽이 관계가 없는 私奴 仲良이라 칭하는 사람에게 거짓으로 샀다고 칭하며 빼앗아 경작하니 민망할 뿐 아니라, 지난 해에 전답을 산 일을 노비를 매매한 것과 똑같이 官의 증명을 발급받아 本文記의 背面에 爻周(변동 사항을 抹消시키는 것)하고 아직 事目하지 못하였 으므로, 쌍방의 본문기를 眼前(官長 즉 牧使)에 가져들이게 하여 바로잡은 뒤, 남의 文券이 있는 밭을 盜賣한 죄를 법에 따라 엄중히 다스린 뒤에 갈아 먹을 수 있게 해주기 바라므로 분간하여 立旨(증명)하도록 처분하실 일.”이라 하였 고, 이를 접수한 官에서는 같은 달 22일자로 “심문하여 처리할 것이니 잡아오 라.”는 處分(題辭)을 내리고 있다. 이로써 보면 동색마의 납부 대상자는 매매 문기에 訂人으로 기록되어 있는 牧子 奴 三孫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訂人의 신분으로 입회한 群頭는 일종의 관직명이다. 群은 목장의 소나 말의 사육에 관한 편성 단위로, 암컷 10필, 수컷 15필을 1群으로 하고, 이를 관리하 며 사육하는 책임자로 牧子 중 良人 1인을 群頭로 임용하였다.⁵⁾ 그러나 본 明 文에서는 牧子와 群頭의 신분이 다 奴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田畚主의 신

5) 『經國大典』 兵典 廐牧條에 「諸道牧場 以雌馬一百匹·雄馬十五匹 爲一群[牛同] 每一群 定群頭一人[牧子內良人擇定 群副同]·群副二人·牧子四人看養」이라 하였다.

분이 良女로 표기되고 있는데, 이는 여자도 자기 이름으로 받을 때매할 수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左(男)·右(女)手寸은 여자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 手決 대신에 그의 가운데 손가락 마디를 문서에 대고 그린 것을 말한다.

(2) 萬曆貳拾陸年戊戌 拾壹月貳拾貳日 姜應善處明文 (26cm×41cm)

右明文爲臥乎事段 今如凶年良中 口食遷上 出處無路乙仍于 彭木員 故女怪終亦中 買得畊食爲如乎 皮牟柒[斗·升의 기재가 없음]付只 及同員 亡夫邊同生高孝禮果 相換爲在 皮牟伍付只二庫 四標段 東奴丹金田·南小路·西曹千寶田·北奴丹金田 爲等如肆標分明爲在田庫乙 同人亦中 放賣爲遣 價本雌牛壹首乙 捧上爲去乎 後次吾矣子息同生中 相爭爲行有去等 此文記內乙用良告官辨正爲乎事

田主 良女 千 化(右手寸)
 訂人 良夫 文自止(手 決)
 訂人 奴 丹 金(左手寸)
 訂人 女子 石 台
 筆執 高孝禮(手 決)

이 明文은 萬曆 26년 戊戌, 즉 宣祖 31년(1598) 11월 22일에 田主인 良女 千化가 姜應善에게 작성해 준 토지 賣渡文書이다. 지금과 같은 흉년에 식량으로 꾸어먹은 遷上[俗音 환자]⁶⁾를 마련할 길이 없으므로, <지금은> 사망한 여인 [故女]인 怪終에게 사서 갈아 먹던 彭木員의 皮牟 7(말? 되?) 부치기와 같은 지경의 亡夫 쪽의 同生 高孝禮⁷⁾와 相換한 皮牟 5(말? 되?) 부치기 등 두 곳을 同人에게 팔고, 그 값으로 암소[雌牛] 한 마리를 받는다는 내용이다. 본 명문에서는 면적의 단위가 2곳 다 누락되어 있다.

6) 식량으로 꾸어먹은[口食] 환자에 대해서는 『朝鮮王朝實錄』 中宗 17년 12월 戊寅條에 「凡遷上有四種[京倉遷上·上年遷上·口食遷上·種子遷上] 若一時竝徵 則雖豐年 民皆逃散 督及族隣 其怨可知」라 하여, 대체로 환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서울 창고의 환자, 지난 해의 환자, 식량으로 꾸어먹은 환자, 종자로 꾸어먹은 환자], 만일 일시에 그것을 모두 징수하면 비록 풍년이라 하더라도 백성들이 모두 도망쳐 흩어질 것이며, 독촉하여 친족이나 이웃에까지 미친다면 그 원성을 짐작할 수가 있다고 하였다.

7) 내용 중 同生 高孝禮가 田主인 良女 千化의 亡夫邊이라 하면 남편이 高氏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남편이 文自止로 되어 있는 아래의 내용과 모순된다. 즉 인조 4년(1626) 4월에 제주목에서 발급한 準戶口에는

朝鮮後期 田畚賣買文記의 研究

(3) 萬曆肆拾捌年 庚申 玖月初玖日 姜繼勳處明文 (40cm×39cm)

右明文爲臥乎事段 矣身年老分叱不喻 寒痰饋夫十餘年 遂生利爲難乙仍于 妻邊傳得 畊食爲如乎 皮文里以北邊員 皮牟拾升付只田 四標段 東南奴丹金田·西天逝陣荒田·北又奴丹金土 分明四標田庫乙 同人處永永放賣 價本段 回奉〈木〉壹疋 准計捧上爲遺 後此相爭人行去等 此明文內乙用良 告官辨正爲乎事

田主 老人 夫自寶(左寸)
 訂人 奴 丹 金(左寸)
 訂人 金草福(左寸)
 筆執 高孝禮(手決)

이 明文은 萬曆 48년(泰昌 원년의 착오) 庚申, 즉 光海君 12년(1620) 9월 초 9일에 田主人 老人 夫自寶가 姜繼勳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文記이다.

내용은 “이 몸이 年老할 뿐 아니라 쓸쓸한 홀아비가 된 지 10여 년에 마침내 생활이 어려운 탓으로 妻家에서 妻 몫으로 물려 받아 갈아 먹던 皮文里 북쪽 지경의 皮牟 10되 부치가 밭을 同人에게 영원히 매도하고, 그 값으로 回奉(捧)木(代價로 받는 무명) 1필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받는다.”는 것이다.

(4) 天啓陸年 丙寅 五月貳拾伍日 姜應善亦中明文 (30cm×47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父母前傳得 畊食爲如乎 皮文里內員 皮牟壹石付只 四標段 東小路·南戶奴丁卜田·西北買者爲等如分明田庫乙 同人亦中 放賣爲遺 價本 臆雄牛四禾壹首乙 准計捧上 永永放賣爲去乎 後次此 吾矣同生子息中 相

「天啓六年內寅四月 日濟州牧官 (중략) 內瞻寺奴丹金 年六十七戊午 父金世連故 母同寺婢丹心故 同奴同生同寺婢丹朱 年五十三壬申 (중략) 良女千化 年六十一甲子 本不知〈父〉曹進乞故 祖·曾祖不知 外祖咸尙同故 同千化子文福 年十七戊申 本卜城 殘病 父文自止 各居 祖元奉故 曾祖允昌故」라 하였고, 인조 8년(1630) 12월의 戶口單子에는 「崇禎三年十二月 日戶口單字 (중략) 良女千化 年六十七甲子 本不知 父曹進乞故 祖·曾祖不知 外祖咸尙同故 本不知 同千化子文福 年卅三戊申 本卜城 殘病 父文自止 各居 祖元奉故 曾祖允昌故」라 하였다. 위 두 기록에 의하면 良女 千화와 良夫 文自止는 부부간이며, 訂人 으로 입회한 丹金은 內瞻寺奴(官奴)로 父는 金世連, 母는 同 寺婢(官婢)인 丹心이었다. 그러나 准호구에는 나이가 부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爭人是去等 此明文內已用良 告官辨正爲乎事

田主 夫帛廻(左寸)

訂人 姜應林(手決)

訂人 夫終連

筆執 高孝禮(手決)

이 明文은 天啓 6년 丙寅, 즉 仁祖 4년(1626) 5월 25일에 田主人 夫帛廻가 姜應善에게, 要用所致로 父母님으로부터 상속 받아서 갈아 먹던 皮文里 內員 [거리왓]의 皮牟 1섬부치기 밭을 同人에게 팔아버리고, 그 값으로 네살배기 雄牛(種牛) 1마리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받고 있다.

(5) 崇禎參年 庚午 伍月初五日 姜繼勳處明文 (27cm×39cm)

右明文事段 牧子以使內時 故失馬綿布 他無出處乙仍于 妻邊祖上傳來爲在 里內以北邊員 皮牟三石付只 東不知陳荒田·南買者田·西小路·北不知田 四標爲等如分明正 爲在田庫 價本綿三疋乙 准計捧上爲遺 同人處永永放賣爲去乎 後此 雜談有去等 此明文內乙用良 告官下正事

田主 奴 墨 迫(手寸)

筆執 金彥奎(手決)

이 明文은 崇禎 3년 庚午, 즉 仁祖 8년(1630) 5월 초5일에 田主人 奴 墨迫이 姜繼勳에게, 牧子로 使役할 때 故失馬의 代價인 綿布를 달리 마련할 곳이 없으므로, 妻家祖上 대대로 전해 오는 마을 안 북쪽 지경의 皮牟 3섬 부치기 밭 값을 木棉[무명] 3필로 계산하여 받고 同人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의 奴가 田主로 되어 있다.

(6) 崇禎參年 庚午 伍月貳拾壹日 姜應善處明文 (40cm×53cm)

右明文事段 前矣父亦 西學長以 教訓之時 五寸叔母父姜應善亦 其子繼勳教訓 則其 功不小是如 論賞以 明月城內伏在田 皮牟捌斗付只田庫乙 許給後 將至貳拾余年 畊食爲如可 父身死後 本主亦 無價本田庫是如 還畊爲去乙 前前許給 辭緣 必于無價本 田庫喻良置 矣衿得田乙 無償而許給不得爲乎等用良 同田庫乙 還本主爲遺 價本段 五禾狸卜牛壹首 及木綿貳疋等乙 捧上爲遺 同田庫乙

朝鮮後期 田畝賣買文記의 研究

永永還本主爲去乎 後次爭望爲去等 此文記內乙用良 告官辨正爲乎事

田主 高召吏(右手寸)

訂人

訂人

筆執 高孝禮(手 決)

이 明文은 崇禎 3년 庚午, 즉 仁祖 8년(1630) 5월 21일에 田主인 高召吏가 姜應善에게, 전에 아버지가 西學의 學長으로 敎訓할 때, 5촌 叔母夫人인 姜應善이 자기 아들인 繼勳을 敎訓하였으니, 그 功이 적지 않다고 論賞하여 明月城內의 皮牟 8말 부치기 받을 넘겨 준 뒤, 20여 년에 이르기까지 갈아 먹다가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는 本主(姜應善)가 값이 없는 밭이라고 하며 도로 경작하려 하므로, 전전해에 이미 넘겨 준 辭緣은 설사 값이 없었던 밭이라 할지라도 이 몸의 몫으로 받은 밭이므로 無償으로는 넘겨주지 못하겠다고 하여, 그 밭을 本主에게 돌려 주는 代價로 다섯 살배기 狸卜牛 1마리와 木綿 2필을 받고 그 밭을 영원히 돌려준다는 내용이다.

(7) 崇禎柒年 甲戌 肆月初壹日 姜應善處明文 (30cm×43cm)

右明文爲臥乎事段 矣身亦 追鹿以 每朔皮物對答爲如乎次 累朔至朔促 備納不得之際 隣里接同姜應善處 五升木棉一疋 貸得皮物價 買得納官後 五六年至備價不得乙仍于 父邊祖上傳來耕食爲如乎 者古川員錢田 粟貳斗付只 四標段 東西南北皆爲陳荒田是乎等用良 爲等如四標是白去乙 同田庫乙 同人亦中 永永放賣爲去乎 後此次 子孫遠近族類中 相爭人是去等 此文記內乙用良 告官辨正爲乎事

田主 金應福(左手寸)

訂人 夫丕屎(左手寸)

訂人 夫厚連(左手寸)

筆執 高孝禮(手 決)

이 明文은 崇禎 7년 甲戌, 즉 仁祖 12년(1634) 4월 초1일에 田主인 金應福이 姜應善에게, 이 몸이 追鹿⁸⁾으로 매달 皮物을 對答(納付)⁹⁾ 하던 차, 여러 달

8) 追鹿은 진상용 鹿皮를 마련하여 官에 바치는 사람으로, 『耽羅志』 濟州牧 貢獻 三名 日條에 「東西追鹿各十五名 進上所用鹿皮 唯分定數備納後 量給價物」이라 하였다. 즉 “동서의 追鹿이 각각 15명인데 진상에 소용되는 녹피는 오직 정해진 수량을 나누어서 마련해 바친 뒤, 價物(대가로 치러 주는 물건)을 헤아려 지급한다.”고 하였다.

9) 對答이란 古文書에서는 徭役이나 신역과 관련하여 관용어처럼 쓰이던 말로서 거행이라는 뜻으로 쓰였으나 여기서는 납부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朝鮮時代 南原屯德坊의 全州李氏와 그들의 文書(Ⅰ)』 全北大學校博物館 1990, p.162 참조.

초하루가 되면 독촉하였으나 납부하지 못할 즈음에, 이웃 마을에 사는 姜應善에게 닛새 무명[五升木棉] 1필을 皮物價로 빌려서 <皮物을> 매득하여 官에 바친 뒤, 5,6년 값을 마련하지 못한 닛으로 父邊祖上 대대로 전해 오며 갈아 먹던 者古川員의 錢田 粟 2섬 부치기 받을 同人에게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8) 順治拾貳年乙未 正月初拾日 木手金英連處明文

右明文事段 罔極所致以 父生前時 豚兒如父身故乙仍于 婢矣身不能埋葬是乎等 乙仍 棺板壹部 及埋葬則功 價本 大橋絡員 皮牟貳拾斗付只田乙 金弘福處買得 爲在田 四標段 東奴昌仁田·南西小路·北張卜田 爲<等>如 四標分明正爲在田 庫乙 同人處 永永放賣爲去乎 後次 遠近族類中 相爭人有去等 持此文記內乙用 良 告官下正事

田主 喪人 私婢 石 生(右手寸)
 訂人 高允徽(手 決)
 訂人 奴 夢 良(左手寸)
 筆執 前 訓導 姜士雄(手 決)

이 明文은 順治 12년 乙未, 즉 孝宗 6년(1655) 정월 초10일에 田主인 喪人 私婢 石生¹⁰⁾ 이 木手 金英連에게 작성해 준 것이다. 망극한 소치로 아버님이 살아 계실 때에 어린 아들이 애비와 같이 죽은 닛으로, 婢子인 이 몸이 매장할 수 없었으므로 棺板 1부와 매장한 功의 값으로 金弘福에게 산 大橋絡員의 皮牟 20말 부치기 받을 同人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내용이다.

(9) 順治拾伍年戊戌 正月貳拾陸日 姜姬載處明文 (45cm×33cm)

右明文事段 多男女産長 貧寒所致以 生理爲難乙仍于 勢不得已 父前衿得爲在 今勿岳里內大街員 皮牟貳拾斗付只田庫 四標段 東姜德男田·南洪卜田·西北

10) 田主인 喪人 私婢 石生은 康熙 11년(孝宗 9, 1658) 12월에 濟州牧에서 발급한 校生 姜鈞瓚의 準戶口에 그 이름이 보인다.

「康熙十一年十二月 日濟州牧 考壬子成籍戶口帳內 州西明月面水流川里住戶 校生 姜鈞瓚年 四十癸酉 本晉州 (중략) 率奴莫一年三十五戊寅 父正兵梁終廻 母私婢莫代 率婢石生年四十七丙寅 父正兵文仍叱 同母私婢成溫 率婢石今年二十癸巳 父私奴石同 母同婢石生 率婢石眞年十二辛丑 父私奴莫一 母上同 率奴莫同年五十二辛酉 父私奴文伊同 母良女其代等 己酉戶口相准准給者 行牧官(手決)」

朝鮮後期 田畝買賣文記의 研究

小路 爲等如四標分明正爲在田庫乙 價本拾疋以 准折正木拾疋捧上爲遺 同人處
永永放賣爲去乎 後日若有子孫中相爭者 則持此文記內乙用良 告官下正爲乎事

田主 良女 姜召吏(右手寸)
訂 子 玄起勳(手 決)
訂 女子寺婢 莫 廷(右手寸)
訂 姪孫 高太宗(左手寸)
筆執 前訓導 姜士雄(手 決)

이 明文은 順治 15년 戊戌, 즉 孝宗 9년(1658) 정월 26일에 田主인 良女 姜
召吏가 姜姬載에게 작성해 준 것이다. 여러 아들 딸이 태어나 성장하는데 가
난한 소치로 생활이 어려운 탓에, 하는 수 없이 아버님에게 몫으로 받은 今勿
岳里內 大街員의 皮牟 20말 부치기 받을, 正木 10필 값으로 환산하여 받고 同
人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것이다.

(10) 康熙陸年丁未 捌月拾柒日 前座首 金崗前明文

右明文事段 矣身無子息寡母以 年次凶年 資生爲難乙仍于 家夫生時 買得起耕
爲如乎 居老里以西邊員 皮牟壹石付只田庫 肆標段 東買者田·南小路·西大
川·北金德尙田 肆標爲等如分明爲在田庫乙 同崗前放賣爲遺 價本段 黑腸半白
禾七雄牛壹首乙 准計捧上爲遺 同前永永放賣爲去矣 家夫遠近族類中 相爭者有
去等 持此明文內乙用良 告官下正爲乎事

田主 寡 母 梁 氏(右手寸)
養子 自筆執 玄承績(手 決)

이 明文은 康熙 6년 丁未, 즉 顯宗 8년(1667) 8월 17일에 田主인 寡母 梁氏
가 前 座首 金崗에게, 이 몸은 자식이 없는 寡母로 매년 흉년이 들어 생활이
어려운 탓으로 家夫 生時에 사서 경작하던 居路里 서쪽 지경의 皮牟 1섬 부치
기 받을 同 前(金崗)에 영원히 방매하고 黑腸半白의 숫소 일곱살배기 1마리를
그 값으로 계산하여 받는다는 내용이다.

(11) 康熙陸年丁未 拾貳月初貳日 吳晟前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今年許多遷上 出處無路以 勢不得已 祖上傳來畊食爲
有如乎 巨洞水員內 參庫合皮牟貳石伍斗付只 四標 東小路·南無主陳荒田·西

小林·北小林 四標爲等如分明正爲在田庫乙 同人亦中 永永放賣爲遺 價本段 粟拾斗·木麥拾斗 准計捧上爲去乎 後次 同生子息孫子中 若有相爭爲有去等 持此文記內乙用良 告官辨正爲臥乎事

田主 高士希(手 決)
證人 梁成好(左手寸)
筆執 洪 逸(手 決)

이 明文은 康熙 6년 丁未, 즉 顯宗 8년(1667) 12월 초2일에 田主人 高士希가 吳晟에게, 要用所致로 금년의 허다한 還上[환자]를 마련할 길이 없으므로, 하는 수 없이 조상 대대로 전해 오며 갈아 먹던 巨洞水員內의 3곳을 합한 皮車 2섬 5되 부치기 받을 同人에게 아주 팔아버리고, 값은 粟 10말과 木麥 10말로 계산하여 받는다는 내용이다. 田主人 高士希와 買受人인 吳晟은 장인과 사위 관계이다.

(12) 康熙玖年庚戌 拾壹月晦日 梁霄漢處明文

右明文段 矣子奴德還亦 兄弟霜字牧子以 閻失同色馬 出處無路乙仍于 父前袴 得爲在 於音非下里西邊 拒于竹員一圓內 參庫合皮牟貳拾斗付只田 四標段 東北橫小路·南奴光德田·西奴春山及張守珍田 四標爲等如分明正爲在田庫乙 同人處永永放賣爲遺 價本段 駟巨割兩耳兩鼻裂雌馬禾貳壹匹 准捧上爲遺 納官 爲去乎 後次若有雜談者是去等 告官下正事

田主 奴 志 卜(左手寸)
證人 奴 目口金(左手寸)
證人 奴 白 男
筆執 高士仁(手 決)

이 明文은 康熙 9년 庚戌, 즉 顯宗 11년(1670) 11월 그믐날에 田主人 奴 志卜이 梁霄漢에게 작성해 준 것으로, 내 아들인 奴 德還 형제가 霜字牧子로 同色馬를 분실하여 마련할 길이 없는 탓에, 아버님으로부터 물려 받은 於音非 下里 서쪽 拒于竹員 一圓 내의 3곳을 합한 皮牟 20말 부치기 받을 방매하고, 그 값으로 거세하고 두 귀와 두 코를 벤 駟雌馬 두살배기를 받는다는 내용이다.

(13) 康熙拾參年甲寅 正月貳拾伍日 高尚倣前明文

朝鮮後期 田畚賣買文記의 研究

右明文事段 凶荒太甚 生理極難乙仍于 樓祿南員 金赫男處買得田 皮牟貳石柒斗付只 四標段 東梁景男田·南李仁壽田·西小川·北買者及李大華田 四標分明田庫乙 價本段 正木柒疋半 準計捧上爲白遺 同高尙艱亦中 本文記并以永永放賣爲去乎 鑽長畊食爲乎矣 後次子息族類中 雜談者有去等 此文記內乙用良告官辨正事

田主 正兵 夫仁業(左手寸)
 訂人 姜天老(手 決)
 訂人 金景水
 筆執 高山吉(手 決)

이 明文은 康熙 13년 甲寅, 즉 顯宗 15년(1674) 정월 25일에 田主人 正兵 夫仁業이 高尙倂에게 작성해 준 문기이다. 흉년이 아주 심하여 생활이 극히 어려운 탓으로, 金赫男에게 산 밭인 樓祿南員의 皮牟 2섬 7말 부치기를, 正木 7필 반을 그 값으로 계산해 받고 高尙艱에게 本文記와 함께 아주 팔아버리므로, 오래오래 갈아 먹으라는 내용이다.

(14) 康熙三十年辛未 七月二十九日 品官金潤玉處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先黃堂員 奴終石買得田 麥種柒斗付只田庫 四標段 東北吳食田·南買者田·西吳男田 四標分明正爲在田庫 買得文記段 他田庫并爲爲有在果 同員祖上流來田 麥種貳斗付只田 四標段 東成就積田·南西吳進象田·北高召史田 四標爲等如分明正爲在田庫 價本段 雄牛禾伍壹首 準計捧上爲遺 同人亦中 永永放賣爲去乎 後此同生中 雜談是去等 持此文記內乙用良告官辨正事

同生弟 姜尙元(手決)
 田 主 自筆執 姜尙信(手決)

이 明文은 康熙 30년 辛未, 즉 肅宗 17년(1691) 7월 29일에 田主人 姜尙信이 自筆로 品官 金潤玉에게 작성해 준 文記이다. 요용소치로 先黃堂員의 奴 終石의 買得田인 麥種 7말 부치기와 같은 지경의 祖上流來田인 麥種 2말 부치기 밭 값으로 숫소 다섯살배기 1마리를 계산하여 받고 同人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두 밭 중 買得田의 경우, 買得文記(本文記)는 다른 밭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넘겨주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買得田이 내용상으로

는 奴 終石의 買得田으로 되어 있어, 姜尙信이 奴 終石에게 買入했던 것인 지, 아니면 姜尙信이 上典이었기 때문에 奴 終石의 명의로 매수했던 것인 지는 미상이다.

(15) 康熙肆拾陸(年)丁亥 三月初伍日 姜英發前明文

右文爲事段 要用所致以 矣身自起買得爲在 三每陽里以西邊 泉味同山員 粟種壹斗付只 肆標段 東金取假田·西川·南金碧田·北高友元田 肆標爲白等如[爲等如白]分明爲在田 價本段 正木貳疋乙 准計捧上爲遣 同田庫本文(記段) 他田并付(乙)仍于 不許爲□ 同人前田庫乙 永永放賣爲去乎 日後族類中 雜談相爭是去等 持此文告官下正事

自筆執 高景勳(手決)

이 明文은 康熙 46년 丁亥, 즉 肅宗 33년(1707) 3월 초5일에 高景勳이 自筆로 姜英發에게 작성해 준 文記이다. 요용소치로 내 자신[自起]이 산 三每陽里 서쪽 泉味同山員의 粟種 1말 부치기 밭을 正木 2필로 그 값을 계산해 받고 방매하는 내용이다. 本文記는 다른 밭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넘겨 주지 못한다고 하였다.

(16) 康熙四十六年丁亥 三月初十日 姜義南處明文

右明文事段 矣率狗亦 同人今生雌馬殺食乙仍于 勢不得已 祖上傳來畊食爲如乎 炭旨員 粟種參斗付只田庫 四標段 東西金在鍊·南金潤玉·北高斗瞻等田 四標爲等如分明正爲在田庫 同人處 今生雌馬價報給爲去乎 日後雜談是去等 持此文記內良用[內乙用良] 告官下正事

田主 金時寶(手決)

證人 宋生男(手決)

筆執 權武英(手決)

이 明文은 康熙 46년 丁亥, 즉 肅宗 33년(1707) 3월 초10일에 田主人 金時寶가 姜義南에게 작성해 준 文記로, 내 집 개[狗]가 同人의 今生[한살배기] 雌馬를 잡아 먹은 탓으로, 하는 수 없이 조상 때부터 전해 내려오며 갈아 먹던 炭旨員의 粟種 3말 부치기 밭을 同人에게 今生 雌馬 값으로 갚아 준다는 내용이다.

朝鮮後期 田畝賣買文記의 研究

(17) 康熙肆拾陸年丁亥 五月初五日 寺奴 文山處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妻父前衿得爲在 安奉伊員 皮牟貳石拾斗付只田 東高尚學田 西李希安田 南奴莫男田 北洪立田 四標分明爲在田庫 價本段 步木八正 准計捧上爲遣 同文山處 永永放賣爲去乎 日後 若有相爭雜談者是去等 持此文 記考官下正事

田主 自筆 姜遂(手決)

이 明文은 康熙 46년 丁亥, 즉 肅宗 33년(1707) 5월 초5일에 田主人 姜遂가 自筆로 寺奴 文山에게 작성해 준 文記이다. 요용소치로 妻父로부터 물려 받은¹¹⁾ 安奉伊員의 皮牟 2섬 10말 부치기 밭을, 步木 8필로 그 값을 계산해 받고 同 文山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내용이다.

(18) 康熙伍拾參年甲午 正月初九日 六寸兄姜迥處明文

右明文事段 皮文里內員 麻子伍斗付只田 自門中公論成文許給爲有如乎 同田庫 在於越山之地 而不得耕作仍于 以立本錢次 農牛壹首捧上用下後 同田報給爲去乎 四標段 東奴高男田 西南買者田 北姜進田 四標分明田庫 永永放賣報給爲去乎 世後若有雜談爭望者是去等 持此下正者

田主 自筆 姜渭臨(手決)

이 明文은 康熙 53년 甲午, 즉 肅宗 40년(1714) 정월 초9일에 田主人 姜渭臨이 自筆로 六寸兄 姜迥에게 작성해 준 文記이다. 皮文里 內員의 麻子 5말 부치기 밭을 門中에서 公論하여 문기를 작성하고 넘겨 주었는데, 그 밭이 산을

11) 다음의 두 문기를 살펴보면, 安奉伊員은 사위 姜遂가 아니라 그의 妻가 물려 받은 밭이었음을 알 수 있다.

(A) 康熙拾參年甲寅 貳月拾陸日 女壻姜遂 成婚日別給(29cm×51cm)

右別給事段 里內員 奴吉乙福處買得爲在 皮牟貳拾伍斗付只田 及專賣水員 玄泰亨處買得爲在 皮牟貳拾斗付只田 及古面伊員 金鐵承處買得爲在 皮牟貳石付只田 及柑木田員 曹應男處買得爲在 皮牟貳拾伍斗付只田 及馬壹匹·牛壹首等物乙 永永別給爲臥乎事

財主 校生 梁沔漢(手決)

筆執 校生 梁汀漢(手決)

(B) 康熙肆拾參年甲申 拾月拾伍日 女子衿

安奉員 高斗元處買得爲在 皮牟參石付只 及防禦員 栗肆斗付只 及山神旨員 姜汝一處賣[買]得爲在 栗捌升付只 及家坐南邊 麻子參斗付只內 東邊 麻子壹斗伍付只

自筆 父(手決)

넘어야 하는 地境에 있어서 경작하지 못하는 탓으로, 本錢을 만들기 위해[立本錢次] 農牛 1마리를 받아 쓴 뒤, 그 밭으로 방매 형식을 취해 갚아 준다는 것이다.

(19) 康熙伍拾肆年乙未 貳月初拾日 高斗瞻處明文

右明文事段 值此大殺之年 餓死當迫 他無連命之路乙仍于 炭旨貝 金時寶處買得爲在 粟種參斗付只 四標段 東及西金在鍊田·南金在仇田·北買者田 四標爲等如分明爲在田庫乙 價本段 壯雌馬壹匹 准計捧上後 同人處 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中 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內乙用良 告官辯正事

田主 奴 衣 男(左手寸)

證人

證人

筆執 李億株(手 決)

이 明文은 康熙 54년 乙未, 즉 肅宗 41년(1715) 2월 초10일에 田主인 奴 衣 男이 高斗瞻에게 작성해 준 文記이다. 흉년을 당하여 굶어 죽을 날이 임박했으나 달리 연명할 방법이 없는 탓으로, 金時寶에게 買得한 炭旨貝의 粟種 3말 부치기 밭을 壯雌馬 1필로 값을 계산해 받은 뒤, 同人에게 本文記와 함께 영원히 방매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밭은 문서번호 (16)에 의하면, 肅宗 33년(1707) 3월 초10일에 金時寶가 姜義南에게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본문에서는 奴 衣男이 高斗瞻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다음의 문서번호 (20)에 의하면, 약 한 달이 지난 뒤에 奴 衣男이 다시 李訓長宅 牧童 奴 初一에게 매도하고 있다. 따라서 본 明文과 (20)의 내용이 동일하고, 또 高斗瞻이 (20)에서 訂人으로서 입회한 것으로 보아 본 明文은 成事되지 않은 文記가 아닌가 한다.

(20) 康熙五十肆年乙未 三月十九日 李訓長宅 牧童奴 初一處明文

右明文事段 值此大殺之年 餓死當迫 他無連命之路乙仍于 炭旨貝 金時寶處買得爲在 粟種參斗付只 四標段 東及西金在鍊田 南金在仇田 北高斗瞻田 四標爲等如分明爲在田庫 價本段 壯雌馬壹匹 准計捧上後 同人處 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中 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內乙用良 告官下正事

田主 奴 衣 男(左手寸)

朝鮮後期 田畚賣買文記의 研究

訂人 高斗瞻(手 決)

筆執 金泰完(手 決)

이 明文은 康熙 54년 乙未, 즉 肅宗 41년(1715) 3월 19일에 田主人 奴 衣男이 李訓長宅 牧童奴 初一에게 작성해 준 文記이다. 그러나 앞(19)의 문서와 날자·訂人·筆執이 다를 뿐 내용은 동일하다. 다만 여기서는 앞 문서의 買受者가 訂人으로 입회하고 있다. 李訓長宅의 牧童奴 初一이 上典을 대신하여 토지매매에 참여한 점이 주목된다. 당시 양반들은 자신이 직접 토지매매에 참여하는 것을 기피하고 대신 그의 奴僕을 시켜 토지매매 등의 문기에 署名케 하는 것이 通例였다.

따라서 본 명문은 李訓長宅 牧童奴 初一이 上典을 대신하여 奴 衣男으로부터 받은 문기이다. 그러나 상전이 누구였는지는 미상이다.

(21) 雍正拾貳年甲寅 伍月拾肆日 幼學秦龍瑞處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眞外家傳來 父主衿得爲在 今岳北邊 沔田員貳庫 合皮牟貳拾斗落只 四標段 東無主陳荒·西小路·南梁萬江·北小川 四標分明爲等如價本段 騎雌馬價以 正木肆疋 准計捧上爲遺 同人處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他田之并付乙仍于 不得許與而 日後子孫族屬中 如有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內 乙用良 告官下正事

田主 幼學 趙時榮(手決)

訂人 幼學 玄陞聞(手決)

筆執 洪潤河(手決)

이 明文은 雍正 12년 甲寅, 즉 英祖 10년(1734) 5월 14일에 田主人 幼學 趙時榮이 幼學 秦龍瑞에게 작성해 준 文記이다. 요용소치로 眞[陳]外家 대대로 전해 오다가 아버님이 물려 받은 밭[衿得田]인 今岳北邊 沔田員의 2곳을 합한 皮牟 20말지기를 騎雌馬 값으로 <환산하여> 正木 4필을 계산해 받고 同人에게 放賣하고 있다. 그러나 本文記는 다른 밭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22) 乾隆貳拾貳年丁丑 捌月拾五日 洪重澤處明文

右明文事段 連值凶荒 □□所食還上 備納無路乙仍于 上年夏捧爲始 難故年年

有債 報給爲難 勢不得已 去仍岳北邊 成必田員 父主衿得畊食田 粟種拾斗付只
田庫 四標段 東宋吉星田·西奴太連田·南高利瞻田·北奴太卜田 四標分明爲
在田庫 價本段 牟·粟并捌石 切定捌疋 切價又正木拾貳疋 貳庫合正木貳拾疋
准計捧上後 同洪重澤處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族類子孫中 爭望者是去等
持此文記內乙用〈良〉告官下別爲乎事

田主 趙始普(手 決)
同姓 姪子 泰楚(喪不着)
筆執 安詣隆(手 決)

이 明文은 乾隆 22년 丁丑, 즉 英祖 33년(1757) 8월 15일에 田主人 趙始普가
洪重澤에게 작성해 준 文記이다. 연이은 흉년을 만나 빌려 먹은 還上[俗音 환
자]를 마련해 납부할 방법이 없는 탓으로, 지난해 夏捧을 위시하여 어려운 연
고로 해마다 빚이 되어 갚아 주기가 어렵게 되자, 하는 수 없이 아버님께서 물
려 받아 갈아 먹던 去仍岳[거린악] 北邊 成必田員의 粟種 10말 부치기 받을 牟
粟을 합쳐 8섬으로 換算하여 正木 8필과 12필로 각각 값을 정하고, 2곳을 합계
하여 正木 20필을 계산해 받은 뒤, 洪重澤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내용이다.

(23) 乾隆參拾伍年庚寅 正月貳拾柒日 姜興復處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兄處買得田 平代員 粟種壹斗付 四標段 東鄭聖僑田·西
鄭善僑田·南朴世豪田·北小路 四標分明爲在田庫 價本段 正木貳疋半 准計捧
上後 同人處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告
官下正事

田主 鄭忠僑(手決)
筆執 金軫采(手決)

이 明文은 乾隆 35년 庚寅, 즉 英祖 46년(1770) 정월 27일에 田主人 鄭忠僑
가 姜興復에게 작성해 준 文記이다. 요용소치로 형에게 매득한 밭인 平代員의
粟種 한 말 부치기를 正木 두 필 반으로 그 값을 계산해 받고 本文記와 함께
영원히 방매한다는 내용이다.

(24) 乾隆參拾伍年庚寅 貳月初柒日 姜興復處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今勿岳里西邊平代員 祖上流來田庫 皮牟伍斗付只田庫

朝鮮後期 田畝買賣文記의 研究

肆標段 東及北小路·西買者田·南小路 肆標分明定爲在田庫 價本段 正木參疋
準計捧上爲遣 同興復處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 子孫族類中 雜談之弊是去
等 持此文記以 告官下正事

田主 鄭聖僑(手決)

筆執 洪瀛泰(手決)

이 明文은 乾隆 35년 庚寅, 즉 英祖 46년(1770) 2월 초7일에 田主人 鄭聖僑
가 姜興復에게 작성해 준 文記이다. 요용소치로 今勿岳里 서쪽 平代員의 祖上
流來田인 皮牟 5말 부치기를 正木 3필로 그 값을 계산해 받고 방매한다는 내
용이다.

(25) 乾隆參拾伍年庚寅 貳月拾伍日 姜興復處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Y仁岳北邊員 趙始普處買得 所謂成粥田 粟種伍斗付
只田庫 肆標段 東宋德樞田·西奴太連田·南洪瀛龜田·北奴太福田 肆標分明
定爲在田庫 價本段 正木貳拾疋 準計捧上爲遣 同興復處 本文記并以 永永放賣
爲去乎 日後良中 子孫族類中 爭望之弊是去等 持此文記以 告官下正事

田主 洪重澤(手決)

筆執 洪瀛泰(手決)

이 明文은 乾隆 35년 庚寅, 즉 英祖 46년(1770) 2월 15일에 田主人 洪重澤이
姜興復에게 작성해 준 文記이다. 요용소치로 趙始普에게 買得한 Y仁岳[거린
악] 북쪽 지경의 이른바 成粥田 粟種 5말 부치기 받을 正木 20필로 그 값을
계산해 받고 本文記와 함께 영원히 방매한다는 내용이다. 문서번호 (22)와 동
일한 밭이나 여기서는 5말 부치기만 매도되고 있다.

(26) 乾隆伍拾肆年己酉 二月初六日 姜執壤處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矣祖上流來田 今勿岳南邊里內員 皮牟四斗付只田庫
四標段 東南洪永元田·西朴世豪田·北小路 標分明爲在田庫 價本段 正木四疋
半 準捧後 同人處 永永放賣爲去乎矣 本文記段 都許中載錄故 不得許給爲去乎
若有日後良中 族親族類中相爭雜談之弊有[去等] 持此文記 告官下正事

田主 宋召史(右手寸)

筆執 李東蕃(手決)

이 明文은 乾隆 54년 己酉, 즉 正祖 13년(1789) 2월 초6일에 田主人 宋召史가 姜執壤에게 작성해 준 文記이다. 요용소치로 나의 祖上流來田인 今勿岳南邊 里內員의 皮牟 4말 부치기를 正木 4필로 값을 계산해 받고 방매하되, 本文記는 都許文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27) 乾隆陸拾年乙卯 參月初肆日 姜執壤處明文

右明文事段 當此大殺之年 生道無路乙仍于 勢不得已 今勿岳東邊長泉員 姜應老處買得 粟種貳斗付 畚租壹斗 并四標段 東無主田·西高岳·南金世宅田·北金次先田 四標分明定爲在田畚 價本段 正木參疋 準計捧上爲遺 同執壤處 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 子孫族屬中 爭欲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以 告官下正事

田主 高召史(右手寸)

筆執 洪瀛泰(手 決)

이 明文은 乾隆 60년 乙卯, 즉 正祖 19년(1795) 3월 초4일에 田主人 高召史가 姜執壤에게 작성해 준 文記이다. 흉년을 당하여 살아 나갈 방도가 없는 탓으로, 하는 수 없이 姜應老에게 買得한 今勿岳 東邊 長泉員[진샘이]의 粟種 2말 부치기와 畚租 1말 부치기를 正木 3필로 값을 계산해 받고 방매하는 내용이다.

(28) 乾隆陸拾年乙卯 拾壹月初肆日 姜興復處明文

右明文事段 當此荒年 生道無路乙仍于 勢不得已 草(家)三間壹鞭 及家坐田 皮牟壹斗付并以 東小路·西及南門路·北賣者家坐田·四標分明定爲在田庫 價本段 正木貳疋拾尺 準計捧上爲遺 同人處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他田并付乙仍于 不得許給爲去乎 日後良中 子孫族屬他人中 爭欲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以 告官下正事

田主 金仁壽(喪不着)

筆執 洪瀛泰(手 決)

이 明文은 乾隆 60년 乙卯, 즉 正祖 19년(1795) 11월 초4일에 田主人 金仁壽가 姜興復에게 작성해 준 文記이다. 흉년을 당하여 살아 나갈 방도가 없는 탓으로, 하는 수 없이 草家 3칸 1채[鞭]와 家坐田[집터왓] 皮牟 1말 부치기를 합

朝鮮後期 田畝買賣文記의 研究

하여 正木 2필 10자를 그 값으로 계산해 받고 방매하되, 本文記는 다른 밭이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田主는 手決 대신에 喪不着이라 하였는데, 이는 喪中일 때 署名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29) 嘉慶元年丙辰 參月貳拾柒日 金錫東處明文

右明文事段 當此荒年 生涯無路乙仍于 勢不得已 同石東處 農牛壹首起畊矣 賊爲見失故 報給勢難是乎等以 今勿岳南邊 小峇多員 祖上流來田 皮牟參斗付只田庫 肆標段 東高元寬田·西小路及南高昌興田·北洪河通田 田庫四標分明爲遺 甘木東山員 祖上流來田 皮牟陸斗付只田庫 肆標段 東小路及西梁國大田·南買者田·北賣者田 四標分明爲遺 貳庫合田庫 價本段 正木肆疋 准計捧上爲遺 同人處永永報給爲去乎 日後良中 子孫同生族類中 相爭持[之]弊是去等 持此文記 告官下正事

田主 高聖澤(手決)

保主 高聖興(手決)

筆執 洪瀛龜(手決)

이 明文은 嘉慶 원년 丙辰, 즉 正祖 20년(1796) 3월 27일에 田主인 高聖澤이 金錫東에게 작성해 준 文記이다. 흉년을 당하여 살아 나갈 방도가 없는 탓으로, 하는 수 없이 同 錫東에게 農牛 1마리를 빌려 경작하다가 도적에게 분실 당하여 값아주기 어려운 형편이므로 今勿岳 南邊 小峇多員의 祖上流來田인 皮牟 3말 부치기와 甘木東山員의 祖上流來田인 皮牟 6말 부치기 등 2곳을 正木 4필로 값을 계산하여 받고 同人에게 영원히 값아 준다는 내용이다. 여기서는 證人 혹은 訂人이란 용어 대신에 保主라고 하였다.

(30) 嘉慶元年丙辰 肆月初貳日 姜興復處明文

右明文事段 前年分 同人前 農牛壹首借而使之是如可 洞內高星興借之 則爲賊失之故 同牛隻價捧之 則今勿岳里南邊 小薯多員 皮牟參斗付只田庫 肆標段 東高遠寬田·西小路·南高昌興田·北洪河通田 四標分明爲遺 又甘木東山員 皮牟陸斗付只田庫 肆標段 東小路·西梁國大田·北高星澤田·南賣者田 四標分明正爲遺貳庫 合衆論正木參疋半決價 而牛價段 正木肆疋半決價後 貳庫田及正木壹疋與本文記并以 同人前永永報給爲去乎 日後良中 子孫族屬他人中 雜談之

弊是去等 持此文記以 告官下正事

田主 金石東(喪不着)

筆執 洪瀛泰(手 決)

이 明文은 嘉慶 원년 丙辰, 즉 正祖 20년(1796) 4월 초2일에 田主人 金石東이 姜興復에게 작성해 준 文記이다. 지난해에 同人으로부터 농우 한 마리를 빌려서 사용하다가, 동네 高屋興이 이를 빌려갔는데 도적에게 분실당하였으므로, 그 소의 값을 받되, 今勿岳南邊 小峇多員의 皮牟 3말 부치기와 甘木東山員의 皮牟 6말 부치기 등 2곳을 正木 3필 반으로 값을 정하고, 소 값은 正木 4필 반으로 값을 정하여, 2곳의 밭 및 正木 1필과 本文記를 합쳐서 同人에게 영원히 값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본 명문은 문서번호 (29)와 같은 밭으로, 원래는 金石東이 姜興復에게 빌렸던 農牛를 다시 金石東으로부터 高聖澤이 다시 빌려 농사를 짓다가 도적에게 분실되었는데, 그 때 金石東이 소 값으로 받은 밭 2곳(正木 4필로 환산)을 姜興復에게는 正木 3필로 환산하고 거기에 정목 1필을 더 언저서 값고 있다. 본 명문에서는 소 값을 정목 4필 반으로 환산하였으나 실제로는 4필로 값고 있는 것이다.

(31) 道光元年辛巳 三月二十八日 姜元相處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今岳西邊 雙馬磊員 自起田 粟種貳升付只 東北買者田·南朴應福田·西小路 四標分明爲去乎 田庫價本段 正木壹疋 準計捧上後 同人 三從兄弟處門路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中 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 告官下正事

田主 姜鳳至(手決)

筆執 金仁大(手決)

이 明文은 道光 원년 辛巳, 즉 純祖 21년(1821) 3월 28일에 田主人 姜鳳至가 姜元相에게 작성해 준 文記이다. 요용소치로 今岳 서쪽 雙馬磊員의 自起田 粟種 2되 부치기를 정목 1필로 값을 계산하여 받은 뒤, 同人 三從兄弟에게 門路로 영원히 방매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門路, 즉 '올레' 를 사고 있다.

(32) 道光參年癸未 <月 탈락>參拾日 姜執壤處明文

右明文事段 農牛無路仍于 勢不得已 矣父買得田 猪田員 粟伍升付只田庫 四標段 東鄭邦旭田·西朴必福田·北李光春田·南高昌朱田 四標分明爲遺田庫 價

朝鮮後期 田畝賣買文記의 研究

本段 四禾雄牛壹首捧上 而右人處 正木壹疋乙 加給後 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
去乎 日後 矣子孫族屬中 如或有雜談之弊是良置 持此文記下正事

田主 安召史(右手寸)

筆執 高明兼(手 決)

이 明文은 道光 3년 癸未, 즉 純祖 23년(1823) 모월 30일에 田主人 安召史가 姜執壤에게 작성해 준 文記이다. 農牛를 마련할 방법이 없는 탓으로 하는 수 없이 아버님이 買得한 밭인 猪田員의 粟 5되 부치기 값으로 네살배기 숫소 1마리를 받고 동인에게 正木 1필을 더 준 뒤, 本文記와 함께 영원히 방매하는 내용이다.

(33) 道光二十九年己酉 二月初九日 金孟處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妻堂[黨]流來田一庫 山底水員 牟種拾斗付只 右人處 白木拾陸疋捧上後 此田永爲放賣是遺果 四標段 東丁宗日田·南奴貴福田·西北買者田 標分明是遺 日後 若有相爭之弊是去等 持此文下正事

田主 秦丁岳(手決)

筆執 宋□浩(手決)

이 明文은 道光 29년 己酉, 즉 憲宗 15년(1849) 2월 초9일에 田主人 秦丁岳이 金孟에게 작성해 준 文記이다. 요용소치로 妻家の 流來田 1곳인 山底水員의 牟種 열 말 부치기 값을 白木 16필을 받은 뒤, 영원히 방매하는 내용이다.

(34) 道光參拾年庚戌 二月初八日 吳台順處明文

右明文事段 右人處已有前債 故不得已 衿得田 今岳境龍端伊下院員 粟種捌刀付只田庫 四標 東姜元尙田·西梁廷昌田·南□□□田·北梁履洛田 四標分明是遺 田庫價本段 白木拾貳疋價 永永成文許給是矣 本文記段 都許并付故 不得許與爲去乎 日後若有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告官下正事

追 白木貳疋 同年四月初五日 吳台順持去(印章)

田主 自筆執 梁廷益(手決)

이 明文은 道光 30년 庚戌, 즉 哲宗 원년(1850) 2월 초8일에 田主人 梁廷益이 自筆로 吳台順에게 작성해 준 文記이다. 同人에게 이미 진 빚이 있으므로 부득이 衿得田인 今岳境 龍端伊下院員의 粟種 8되 부치기 값을 白木 20필 값

으로 문기를 작성하여 넘겨주되, 本文記는 都許文記에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같은 해 4월 초5일에 吳台順이 白木 4필을 가져갔다고 하였다.

(35) 咸豐元年辛亥 十一月二十五日 玄氏處明文

右明文事段 寡女矣身八字奇薄 早喪家夫 故無依處 回歸本鄉之境 依產全味則呈訴于題音據 面任決處施行 臆家買得于梁處守處 壹庫田 今岳西底 所謂梁司果家基 大泉味員田庫 四標段 東及南北姜執瑚田·西秦亨彬田 各標分明是遺 牟種貳斗付只 決價正木肆疋 準計捧上後 右人處 面任手着標文并以 放賣爲去乎 日後 若有玖族屬嫡子生子中 更爲談之弊是去等 持此明文 相考施行事

田主 朴召史(右手寸)

證筆 姜恒秀(手 決)

이 明文은 咸豐 元年 辛亥, 즉 哲宗 2년(1851) 11월 25일에 田主人 朴召史가 玄氏에게 작성해 준 文記이다. 寡女인 이 몸의 팔자가 기박하여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의지할 곳이 없어 고향으로 돌아올 형편이 되었으나 재산의 처리에 있어서는 아주 우매한 즉, 訴狀을 官에 올리자 題音(題辭)¹²⁾에 의거하여 面任이 판결하여 처리케 하므로, 臆家에서 梁處守에게 매득한 今岳西底의 이른바 梁司果 家基인 大泉味員[한새미왓]의 牟種 2되 부치기를 正木 4필로 값을 정하여 받은 뒤, 右人에게 面任이 서명한 標文¹³⁾과 함께 방매한다는 내용이다.

(36) 咸豐貳年壬子 三月初三日 高漢奉處明文

右明文事段 吾當此荒年 生涯無路 故勢不得已 買得田庫 在於今岳境龍端伊下院員 粟種捌升落只 右田庫四標段 東姜元尙田·西趙明哲田·南梁應田·北梁繼滋田 四標分明是遺 價本段 正木三疋 準計捧上後 右人處 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 子孫族屬中 若有相爭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券 告官下正事

田主 吳台順(手決)

筆執 姜隆喆(手決)

12) 官衙에서 백성들이 제출한 訴狀이나 請願, 陳情書 등에 쓰는 판결이나 指令.

13) 증거의 標로 적은 글발.

朝鮮後期 田畚賣買文記의 研究

이 明文은 咸豐 2년 壬子, 즉 哲宗 3년(1852) 3월 초3일에 田主인 吳台順이 高漢奉에게 작성해 준 文記이다. 凶년을 당하여 살아 나갈 방도가 없는 탓으로, 하는 수 없이 買得田인 今岳境 龍端伊下院員의 粟種 8되지기를 正木 3필로 값을 계산하여 받고 本文記와 함께 영원히 방매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받은 哲宗 원년(1850) 2월 초8일에 田主인 梁廷益이 吳台順에게 賣渡했는데(문서번호 34), 여기서는 吳台順이 高漢奉에게 매도하면서 本文記(舊文記)를 넘겨주고 있다. 그리고 高宗 13년(1876) 3월 28일에는 吳召史(高漢奉의 妻?)가 玄氏에게 매도하면서(문서번호 50) 다시 본문기를 넘겨주었기 때문에 이들 본문기가 모두 姜氏宅에 소장된 것으로 보인다.

(37) 咸豐拾壹年辛酉 十月二十七日 高漢進處明文

右明文事段 吾當此災歲 生涯無路故 矣買得田 在於今岳境上洞 新池東邊員 矣家坐田 皮牟參斗伍升付只田庫 肆標段 東鄭仁卜田·西朴千摠田·南鄭仁卜田·北小路 各肆標分明是遺田庫 價本段 正木參拾疋 準計捧上後 右人處 永永放賣是矣 本文記段 他田并付故 不得許給爲去乎 若有日後子孫族類中 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 告官下正事

田主 李萬東(手決)

證人 任鳳瑞(手決)

筆執 金宗友(手決)

이 明文은 咸豐 11년 辛酉, 즉 哲宗 12년(1861) 10월 27일에 田主인 李萬東이 高漢進에게 작성해 준 文記이다. 凶년을 당하여 살아 나갈 방도가 없으므로, 買得田인 今岳境上洞 新池[새못] 東邊員의 나의 家坐田 皮牟 3말 5되 부치기의 값을 正木 30필로 계산하여 받은 뒤, 本文記는 다른 말이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38) 同治二年癸亥 三月二十二日 玄氏處明文

右明文事段 矣身要用所致故 衿得畚 在於大靜江汀境 銀介桶員而八片合 租種貳斗伍升付只畚庫 四標段 東梁益公畚·西文春連畚·南許親畚·北水洞 四標分明是遺 價本段 白木伍拾伍疋 準計捧上後 右人處 永永放賣是遺 本文記段 都會并付故 不得許與爲去乎 日後 若有子孫族屬中 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 告官下正事

畚主 梁濟日(手決)

筆執 洪錫彩(手決)

이 明文은 同治 2년 癸亥, 즉 哲宗 14년(1863) 3월 22일에 畚主인 梁濟日이 玄氏에게 작성해 준 文記이다. 이 몸이 要用所致로 衿得畚인 大靜 江汀境 銀介桶員의 8片[과니]을 합제한 租種 2말 5되 부치기 논을 白木 55필로 그 값을 계산하여 받은 뒤, 本文記는 都會文記에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39) 同治四年乙丑 十二月初七日 玄氏處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吾矣買得田 在於今岳境 新池東邊員 皮牟肆斗付只田庫 肆標段 東鄭仁卜田·西朴千摠田·南鄭仁卜田·北小路 各肆標 分明是遺田庫 價本段 正木貳拾肆疋 準計捧上後 右人處 永永放賣是矣 本文記段 他田并付故 不得許給爲去乎 若有日後子孫中 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 告官下正事

田主 高漢進 自筆執(手決)

이 明文은 同治 4년 乙丑, 즉 高宗 2년(1865) 12월 초7일에 田主인 高漢進이 自筆로 玄氏에게 작성해 준 文記이다. 요용소치로 今岳境 新池 동쪽 지경의 나의 買得田인 皮牟 4말 부치기를 正木 24필로 값을 계산하여 받고 방매하되, 本文記는 다른 밭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말하는 本文記는 문서번호 (37)의 高漢進이 李萬東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할 때 작성한 新文記를 말하며, 약 4년 뒤에 高漢進은 李萬東에게 매입했던 밭을 玄氏에게 팔고 있다.

(40) 同治肆年丙寅 四月二十二日 玄氏處明文

右明文事 當此荒年 數多家率保命無路 東奔西走 辨[變]通無處 不得已 右人處 白木伍疋貸出 生涯是如可 今則代債報給難堪 流來田 今岳北邊南石伊田員 粟種參升付只田庫 四標段 東梁泗集田·西賣者田·南梁成吉田·北邊氏田 各標 分明是遺 此田庫 白木伍疋價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同生族屬中 若有雜談之弊是去等 持此明文 告官下呈[正]事

田主 自筆執 梁廷孝(手決)

이 明文은 同治 5년, 즉 高宗 3년(1866) 4월 22일에 田主인 梁廷孝가 自筆로

朝鮮後期 田畚賣買文記의 研究

玄氏에게 작성해 준 文記이다. 흉년을 당하여 數多한 家率의 목숨을 보전할 방법이 없어 동분서주하였으나 변통할 곳이 없어 부득이 동인에게 白木 5필을 대출하여 생활하다가 지금에 와서 貸用한 빚을 갚아주기가 난감하여 流來田인 今岳北邊 南石伊田具의 粟種 3되 부치기 밭을 白木 5필 값으로 방매한다는 내용이다. 문기의 同治 4년은 干支가 乙丑이고, 丙寅은 同治 5년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간지를 따라 바로 잡는다.

(41) 同治六年丁卯 十二月初六日 玄氏處明文

右明文事段 年至八旬 當此荒年 生涯無路故 勢不得已 今岳南邊 里內群飢水員 衿得家坐田 皮牟肆斗付只田庫 四標段 東姜宗集田·西姜渭龍田·南金召史田·北金光連田 各標分明是遺田庫 價本段 正木肆拾參疋 準計捧上後 右人處 永永放賣是矣 本文記段 都許中并付故 不得許給爲去乎 日後 子孫族屬中 更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 告官下呈[正]事

田主 呂德太(手決)

筆執 秦宗英(手決)

이 明文은 同治 6년 丁卯, 즉 高宗 4년(1867) 12월 초6일에 田主人 呂德太가 玄氏에게 작성해 준 文記이다. 나이 8순에 이르러 흉년을 당하여 살아 나갈 방도가 없으므로, 하는 수 없이 今岳 남쪽 마을 안의 群飢水員에 있는 물려 받은 家坐田 皮牟 4말 부치기 밭을 正木 4필 3자로 그 값을 계산하여 받은 뒤, 本文記는 都許文記에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許給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42) 同治六年丁卯 十二月二十二日 玄氏處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吾矣買得田壹庫 在於今岳北邊 皮文員 所謂藏弓田 牟種 捌斗付只 四標段 東李京集田·西朴長用田·南洪光俊田·北秦明祿田 各標分明而田庫 價本段 正木陸疋 準計捧上後 右人處 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同生族屬中 更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 告官下呈[正]事

田主 自筆執 高元鎮(手決)

이 明文은 同治 6년 丁卯, 즉 高宗 4년(1867) 12월 22일에 田主人 高元鎮이 玄氏에게 작성해 준 文記이다. 요용소치로 나의 買得田인 今岳北邊 皮文員[갓거리]의 이른바 藏弓田[장군이웃] 牟種 8말 부치기를 正木 6필로 값을 계산하

여 받은 뒤, 本文記와 함께 영원히 방매한다는 내용이다.

(43) 同治六年戊辰 二月三十日 玄氏處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故 吾矣妻衿得畝 在於大靜殷浦通員 租種肆升付 肆標 東及西買者畝·南文春國畝·北文春國畝 各標分明是遺畝庫 價本段 正木伍正貳拾尺 準計捧上後 右人處 永永放賣是矣 本文記段 都許中并付故 不得許給爲去乎 日後 同生子孫中 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 告官下呈[正]事

畝主 康才良(手決)

筆執 梁濟日(手決)

이 明文은 同治 7년 戊辰, 즉 高宗 5년(1868) 2월 30일에 畝主人 康才良이 玄氏에게 작성해 준 文記이다. 요용소치로 내 妻가 妻家로부터 물려 받은 논인 大靜 殷浦通員의 租種 4되 부치기를 正木 5필 20자로 값을 계산해 받되, 本文記는 都許文記에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문기의 干支 戊辰은 同治 7년(1868)이고 丁卯는 同治 6년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간지를 따라 바로 잡는다.

(44) 同治柒年戊辰 參月拾捌日 玄氏處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故 今岳北邊員 梁泗集處相換田 牟種肆斗伍升付 四標段 東南洪雲用田·西買者田·北朴京學田 各四標分明是遺田庫 價本段 白木柒正貳拾尺 準計捧上後 右人處相換文乙 并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中 若有更談之弊是去等 持此明文 告官下正事

田主 自筆執 姜履豪(手決)

이 明文은 同治 7년 戊辰, 즉 高宗 5년(1868) 3월 18일에 田主人 姜履豪가 自筆로 玄氏에게 작성해 준 文記이다. 요용소치로 梁泗集에게 相換한 今岳北邊員의 牟種 4말 5되 부치기를 白木 7필 20자로 값을 계산해 받고 相換文과 함께 영원히 방매한다는 내용이다.

(45) 同治戊辰捌年 六月二十二日 玄氏處明文

右明文事段 矣要用所致 祖上流來田 在於明月境 甘木田員 牟種什斗府[付]只 四標段 東梁行甲田·西高元集田·南洪雲用田·北姜渭尙田 四標分明是矣 價

朝鮮後期 田畚賣買文記의 研究

本段 白木什參疋什尺 準計奉[捧]上後 右人處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中 雜談持[之]弊是去等 持此文記 告官下正事

田主 洪雲興(手決)

筆執 梁行甲(手決)

이 明文은 同治 8년, 즉 高宗 5년(1868) 6월 22일에 田主인 洪雲興이 玄氏에게 작성해 준 文記이다. 나의 요용소치로 祖上流來田인 明月境 甘木田員의 牟種 10말 부치기를 白木 13필 10척으로 그 값을 계산해 받고 영원히 방매한다는 내용이다. 干支 戊辰은 同治 7년이며 8년은 己巳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간지를 따라 바로 잡는다.

(46) 同治七年戊辰 十月二十七日 玄氏處明文

右明文事段 當此荒年 勢不得已 歲[勢]無奈何故 祖上流來田一庫 在於今岳西邊 赤近道田員 牟種柒斗付只 肆標段 東小路·西朴應宗田·南買者田·北小路 各標分明是遺田庫 價本段 白木玖疋柒 準計捧上後 右人處 永永放賣是矣 本文記段 都許并付故 不得許給爲去乎 日後子孫同生中 雜談持[之]弊是去等 持此文記 告官下呈[正]事

田主 姜元涌(喪不着)

筆執 姜恒調(手 決)

이 明文은 同治 7년 戊辰, 즉 高宗 5년(1868) 10월 27일에 田主인 姜元涌이 玄氏에게 작성해 준 文記이다. 흉년을 당하여 어찌할 수 없는 형세이므로 祖上流來田인 今岳西邊 赤近道田員[불근질왓, 질은 沘]의 牟種 7말 부치기를 白木 9필 7척을 값으로 계산해 받고 영원히 방매하되, 本文記는 都許文記에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47) 同治八年己巳 三月十九日 玄氏處明文

右明文事段 當此荒年 生涯末由分叱除良 到此 仲兄出於惡名囚禁 所費□爲貳拾疋故 出處無路 不得已 吾矣衿得家基田 在於今岳南邊 溫磊員 參合皮牟拾柒斗付田庫 肆標段 東小路·西姜宗集田·南小川·北岩石小路 肆標分明是遺田庫 價本段 白木參拾肆疋 準計捧上後 右人處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他田并付故 不得許給是乎乃 日後 若或有同生子孫族屬中 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

記 告官下呈[正]事

田主 金汝朱(喪不着)

筆執 姜恒周(手 決)

이 明文은 同治 8년 己巳, 즉 高宗 6년(1869) 3월 19일에 田主인 金汝朱가 玄氏에게 작성해 준 文記이다. 흉년을 당하여 살아 나갈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지금에 이르러는 仲兄이 惡名으로 囚禁되어 所費한 비용이 20필이 되는데, 나올 곳이 없으므로 부득이 내가 물려 받은 家基田인 今岳 남쪽 溫磊員[오천 이빌레]의 3곳을 합제한 皮牟 17말 부치기를 白木 34필로 그 값을 계산해 받고 영원히 방매하되, 本文記는 다른 밭이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48) 同治八年己巳 十一月初九日 玄氏處明文

右明文事段 緊有用處故 吾矣買得田 在於今岳南邊 加乃泉員 粟種陸升付田庫 肆段 東賣者田·西姜必先田·南朴達用田·北朴汝福田 各標分明是遺田庫 價本段 白木柒疋 準計捧上後 右人處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他田併付故 不得許給爲去乎 日後 若有子孫中 雜談之弊是去等 此文記告官 下正爲臥乎事

田主 自筆 秦慶樂(手決)

이 明文은 同治 8년 己巳, 즉 高宗 6년(1869) 11월 초9일에 田主인 秦慶樂이 玄氏에게 작성해 준 文記이다. 요긴하게 쓸 곳이 있어 나의 買得田인 今岳南邊 加乃泉員[가래새미]의 粟種 6되 부치기를 白木 7필로 그 값을 계산해 받고 영원히 방매하되, 本文記는 다른 밭이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49) 同治玖年庚午 參月拾壹日 玄氏處明文

右明文事段 當此荒年 生道無路故 東西奔走之境 不得已 流來衿得田壹庫 在於今岳西邊 坪垆池員 皮牟拾斗付只田庫 肆標段 東門路·西買者家坐田·南姜永順田·北邊門路 皮牟貳升付 標 東買者畚·北姜恒默處已賣田·兩庫并以 各標分明是遺田庫 價本段 白木貳拾疋 準計捧上後 右人處 永永放賣是矣 本文記段 都許中并付故 不得許給爲去乎 日後 若有同生子孫族屬中 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 告官下正事

朝鮮後期 田畝賣買文記의 研究

田主 姜元涌(喪背着)

筆執 姜恒範(手 決)

이 明文은 同治 9년 庚午, 즉 高宗 7년(1870) 3월 11일에 田主인 姜元涌이 玄氏에게 작성해 준 文記이다. 흉년을 당하여 살아 나갈 길이 없어 동분서주하는 지경에 부득이 流來衿得田인 今岳西邊 坪垆池員[병뒤못]의 皮牟 10말 부치기와 門路北邊의 皮牟 2되 부치기를 白木 20필로 값을 계산해 받고 영원히 방매하되, 本文記는 都許文記에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50) 光緒二年丙子 三月二十八日 玄氏處明文

右明文事段 緊有用處故 吾矣買得田 在於今岳境 龍短而下院員 粟種捌升付田 庫 肆標段 東買者田·西趙明喆田·南梁應用田·北梁啓滋田 各肆標分明是遺田 庫價本段 正木肆疋貳拾尺 準計捧上後 右人處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若有日後子孫中 雜談之弊是去等 持此明券[文] 相考施行事

田主 吳召史(右手寸)

筆執 金宗友(手 決)

이 明文은 光緒 2년 丙子, 즉 高宗 13년(1876) 3월 28일에 田主인 吳召史가 玄氏에게 작성해 준 文記이다. 요긴하게 쓸 곳이 있어 나의 買得田인 今岳境 龍短而下院員의 粟種 8되 부치기를 正木 4필 2자로 값을 계산해 받은 뒤, 本文記와 함께 영원히 방매한다는 내용이다.

(51) 光緒二年丙子 四月初九日 玄氏處明文

右明文事段 當此荒年 生涯無路故 不得已 今岳南邊里內 軍鷹伊水員 姜必用處 相換田 皮牟三斗付田 庫 四標段 東姜必順田·西買者田·南金召史田·北宋貴祿田 標分明而田 庫 價本段 白木玖疋 準計捧上後 右處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同生諸族中 相爭之弊則 以此文記 告官下正事

田主 姜弼得(手決)

筆 金以鏞(手決)

이 明文은 光緒 2년 丙子, 즉 高宗 13년(1876) 4월 초9일에 田主인 姜弼得이 玄氏에게 작성해 준 文記이다. 흉년을 당하여 살아 나갈 방도가 없으므로, 부

득이 姜必用과 相換한 今岳南邊 里內 軍鴈伊水員[군앵이물]의 皮牟 3말 부치기를 白木 9필로 계산해 받은 뒤, 本文記와 함께 영원히 방매한다는 내용이다.

(52) 光緒二年丙子 七月二十日 玄氏處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故 吾之兩人流來弊門路 皮牟壹斗付只 在於今岳里內 後童山員 東西買者田·南朴桂秀田·北姜恒默田及賣者侄姜永弘田 各標分明是遺 價本段 白木貳疋 準計捧上後 本明文記段 都許并付故 不得許給 而右人處 永永放賣爲去乎 若有日後同生子孫中 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 憑考施行事

田主 姜應老(手決)

秦宗雲(手決)

筆執 梁達豪(手決)

이 明文은 光緒 2년 丙子, 즉 高宗 13년(1876) 7월 20일에 田主人 姜應老가 玄氏에게 작성해 준 文記이다. 요용소치로 우리 兩人的 조상 대대로 전해 오는 弊門路인 今岳里 內後童山員[안뒤동산]의 皮牟 1말 부치기를 白木 2필로 값을 계산해 받은 뒤 영원히 방매하되, 本文記는 都許文記에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53) 光緒三年丁丑 正月貳拾捌日 玄氏處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故 今岳南邊文道只岳西邊 長Y員流來田 粟種壹升付只田庫 四表[標]段 東買者田·西南及北林 各表分明是遺 田庫價本段 白木參拾尺 準計捧上後 右人處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族屬中 雜談之弊是去等 持此明文 憑考施行事

田主 洪龍夫(手決)

筆執 姜渭周(手決)

이 明文은 光緒 3년 丁丑, 즉 高宗 14년(1877) 정월 28일에 田主人 洪龍夫가 玄氏에게 작성해 준 文記이다. 요용소치로 今岳南邊의 文道只岳 西邊 長Y員의 流來田인 粟種 1되 부치기를 白木 30척을 값으로 계산해 받고 영원히 방매한다는 내용이다.

(54) 建陽元年丙申 十二月二十八日 玄氏處明文

朝鮮後期 田畚賣買文記의 研究

右明文事段 他田換買之致 吾矣高祖父主掃祭田壹庫 在於今岳北邊皮文里內 亭子于領員 貳庫合 皮牟拾捌斗付 肆段 東梁洛賢田·西買者田·南姜基浩田·北金宗杓田 各標分明而價本段 錢文肆百捌拾伍兩 準捧後 右人處 永永放賣是矣 本文記段 都許中併付故 不得許給爲去乎 日後 若有族屬中 更言之弊 則持此明文相考施行事

田主 姜承周 喪背着(手決은 뒷면 이 부분에 했음)

筆執 姜以行 喪背着(手決은 위와 같음)

이 明文은 建陽 元年 丙申, 즉 1896년 12월 28일에 田主人 姜承周가 玄氏에게 작성해 준 文記이다. 다른 밭과 換買하기 위해 나의 高祖父의 掃祭田 1곳과 今岳 북쪽 皮文里內의 亭子于領員[정자우영]에 있는 2곳을 합제한 皮牟 18말 부치기를 錢文 4백 85냥을 받고 영원히 방매하되, 本文記는 都許文에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55) 光武十年 閏四月二十一日 高元周處明文

右明文事段 有用處故 吾之傳來田 今岳西邊 吾老穴田員一庫 皮牟捌斗付 四標 東姜春彬田·西金性均田·南朴昌用田·北朴文吉田 標分明而田庫 價本段 錢文參佰伍拾兩 準捧後 右人處 永永放賣而本文記段 都許中載錄故 不得許給 日後以此憑考事

田主 自筆 姜爽周(手決)

이 明文은 光武 10년, 즉 1906년 윤 4월 21일에 田主人 姜爽周가 高元周에게 작성해 준 文記이다. 사용할 곳이 있으므로 나의 傳來田인 今岳 서쪽 吾老穴田員[오소리괴]의 皮牟 8말 부치기를 錢文 3백 50냥으로 값을 계산해 받고 영원히 방매하되, 本文記는 都許文에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56) 隆熙元年丁未 十月十一日 姜南彬處明文

右明文事段 切有用處故 吾矣流來田 在於今岳境 皮文岳員 粟種壹升落 四標段 東高丁孫田·西梁斗玉田·南賣者田·北右人墓坐田 各標分明是遺 價本段 錢文貳拾兩 準捧後 右人處永永放賣爲去乎 日後 若有雜談之弊 則此明文憑考事

田主 自筆 梁宸杓(手決)

右記土地 先墓坐田故 都門中前 依本價放賣後 付之先墓位土 以此憑考事 閏今
 月十五日 田主 姜南彬
 姜氏門會 耶

이 明文은 隆熙 元年 丁未, 즉 1907년 10월 11일에 田主人 梁宸杓가 自筆로 姜南彬에게 작성해 준 文記이다. 간절히 사용할 곳이 있으므로 나의 流來田인 今岳境 皮文岳員의 粟種 1되지기를 錢文 20냥을 계산해 받은 뒤 영원히 방매 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토지를 매입한 田主 姜南彬은 윤달인 이 달 15일 부로 姜氏門中會에 “이 토지는 先墓의 坐田이므로 都門中 앞에 本價에 따라 방매한 뒤 先墓의 位土로 부치므로 이를 참고하도록 하라.”고 알리고 있다.

Ⅲ. 마무리 - 綜合的 分析 -

지금까지 살펴 본 文記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放 賣 年 月 日	賣渡者	買受者	取得經緯	放賣事由	地 境	作物	面積	放賣價格
1	宣祖 30(1597) 丁酉 11/17	恩 孟	姜應善	-----	國馬督徵	金水川員	租種	8되	雌馬 1匹
2	宣祖 31(1598) 戊戌 11/22	千 化	姜應善	買 得 田	口食還上	彭木員	皮牟	12?	雌牛 1首
3	光海 12(1620) 庚申 9/9	夫自寶	姜繼勳	妻邊傳得	生利爲難	皮文里北	皮牟	10말	回棒木 1疋
4	仁祖 4(1626) 丙寅 5/25	夫帛廻	姜應善	父前傳得	要用所致	皮文里內	皮牟	1섬	肥雌牛 1匹
5	仁祖 8(1630) 庚午 5/5	墨 迫	姜繼勳	妻邊傳來	故失馬	里內北邊	皮牟	3섬	木棉 3疋
6	仁祖 8(1630) 庚午 5/21	高召吏	姜應善	教訓論賞	還 退	明月城內	皮牟	8되	狸卜牛 1首
7	仁祖 12(1634) 甲戌 4/1	金應福	姜應善	祖上傳來	皮物備納	者古川員	粟種	2섬	五升木棉1疋
8	孝宗 6(1655) 乙未 1/10	石 生	金英連	買 得 田	喪 價	大橋絡員	皮牟	20말	棺板 1部
9	孝宗 9(1658) 戊戌 1/26	姜召吏	姜姬載	父前得	貧寒所致	大街員	皮牟	20말	正木 10疋
10	顯宗 8(1667) 丁未 8/17	梁 氏	金 崗	買 得 田	凶 年	居路里西	皮牟	1섬	雄牛 1首
11	顯宗 8(1667) 丁未 12/2	高士希	吳 晟	祖上傳來	要用所致	巨洞水員	皮牟	2섬5되	粟麥 各10斗
12	顯宗 11(1670) 庚戌 11/未	奴志卜	梁谷漢	父前得	同色馬	拒于竹員	皮牟	20말	雌馬 1匹
13	顯宗 15(1674) 甲寅 1/25	夫仁業	高尙必	買 得 田	凶 年	樓祿南員	皮牟	2섬7말	正木 7疋 半
14	肅宗 17(1691) 辛未 7/29	姜尙元	金閔玉	買得祖上	要用所致	先黃堂員	麥種	9말	雌牛 1首

朝鮮後期 田畝賣買文記의 研究

	放 賣 年 月 日			賣 渡 者	買 受 者	取 得 經 緯	放 賣 事 由	地 境	作 物	面 積	放 賣 價 格	
15	肅宗	33(1707)	丁亥	3/5	高景勳	姜英發	自起田	要用所致	泉味同山	粟種	1말	正木 2疋
16	肅宗	33(1707)	丁亥	3/10	金時寶	姜義南	祖上傳來	犬食雌馬	炭旨員	粟種	3말	今生雌馬 價
17	肅宗	33(1707)	丁亥	5/5	姜 遂	文 山	妻邊衿得	要用所致	安奉伊員	皮車	2섬10말	步木 8疋
18	肅宗	40(1714)	甲午	1/9	姜渭臨	姜 返	門中許給	耕作不便	皮文里內	麻子	5말	農牛 1首
19	肅宗	41(1715)	乙未	2/10	衣 男	高斗瞻	買得田	凶 年	炭旨員	粟種	3말	雌馬 1匹
20	肅宗	41(1715)	乙未	3/19	衣 男	初 一
21	英祖	10(1734)	甲寅	5/14	趙始榮	秦龍瑞	外家傳來	要用所致	今岳沁田	皮車	20말	正木 4疋
22	英祖	33(1757)	丁丑	8/15	趙始普	洪重澤	父主衿得	還上備納	成必田員	粟種	10말	正木 20疋
23	英祖	46(1770)	庚寅	1/27	鄭忠僑	姜興復	買得田	要用所致	平代員	粟種	1말	正木 2疋半
24	英祖	46(1770)	庚寅	2/7	鄭聖僑	姜興復	祖上流來	要用所致	平代員	皮車	5말	正木 3疋
25	英祖	46(1770)	庚寅	2/15	洪重澤	姜興復	買得田	要用所致	仁岳北	粟種	5말	正木 20疋
26	正祖	13(1789)	己酉	2/6	宋召史	姜執壤	祖上流來	.	今岳南邊	皮車	4말	正木 4疋
27	正祖	19(1795)	乙卯	3/4	高召史	姜執壤	買得田	凶 年	長泉員	粟種	2말	正木 3疋
28	正祖	19(1795)	乙卯	11/4	金仁壽	姜興復	草家家坐	凶 年	家坐田	皮車	1말	正木2疋10尺
29	正祖	20(1796)	丙辰	3/27	高聖澤	金錫東	祖上流來	凶 年	小峇多員	皮車	3말	正木 4疋
30	正祖	20(1796)	丙辰	4/2	金石東	姜興復	農牛價	農牛紛失	木東山員	皮車	9말	正木 4疋
31	純祖	21(1821)	辛巳	3/28	姜鳳至	姜元相	自起田	要用所致	隻磊員	粟種	2되	正木 1疋
32	純祖	23(1823)	癸未	7/30	安召史	姜執壤	買得田	農牛마려	猪田員	粟種	5말	雄牛 1首
33	憲宗	15(1849)	己酉	2/9	秦丁岳	金 孟	妻家流來	要用所致	山底水員	車種	10말	白木 16疋
34	哲宗	1(1850)	庚戌	2/8	梁廷益	吳台順	衿得田	負 債	龍端下院	粟種	8되	白木 20疋
35	哲宗	2(1851)	辛亥	11/25	朴召史	玄 氏	買得田	八字奇薄	大泉味員	車種	2되	正木 4疋
36	哲宗	3(1852)	壬子	3/3	吳台順	高漢奉	買得田	凶 年	龍短下院	粟種	8되	正木 3疋
37	哲宗	12(1861)	辛酉	10/27	李萬東	高漢進	買得田	凶 年	家坐田	皮車	3말5되	正木 30疋
38	哲宗	14(1863)	癸亥	3/22	梁濟日	玄 氏	衿得畝	要用所致	銀介桶員	租種	2말5되	白木 55疋
39	高宗	2(1865)	乙丑	12/7	高漢進	玄 氏	買得田	要用所致	新池東邊	皮車	4말	正木 24疋
40	高宗	3(1866)	乙丑	4/22	梁廷孝	玄 氏	流來田	凶 年	南石伊田	粟種	3되	白木 5疋
41	高宗	4(1867)	丁卯	12/6	呂德太	玄 氏	衿得田	凶 年	群心水員	皮車	4말	正木4疋3尺
42	高宗	4(1867)	丁卯	12/22	高元鎮	玄 氏	買得田	要用所致	藏弓田	車種	8말	正木 6疋
43	高宗	5(1868)	戊辰	2/30	康才良	玄 氏	妻衿得畝	要用所致	殷介通員	租種	4되	正木5疋20尺
44	高宗	5(1868)	戊辰	3/18	姜履豪	玄 氏	相換田	要用所致	今岳北邊	車種	4말5되	白木7疋20尺

	放賣年月日				賣渡者	買受者	取得經緯	放賣事由	地境	作物	面積	放賣價格
45	高宗	5(1868)	戊辰	6/22	洪雲興	玄氏	祖上流來	要用所致	甘木田員	牟種	10말	白木13疋10尺
46	高宗	5(1868)	戊辰	10/27	姜元涌	玄氏	祖上流來	凶年	赤近道田	牟種	7말	白木 9疋7尺
47	高宗	6(1869)	己巳	3/19	金汝朱	玄氏	衿得家基	凶年	溫 磊 員	皮牟	17말	白木 34疋
48	高宗	6(1869)	己巳	11/9	秦慶樂	玄氏	買得田	緊有用處	家乃泉員	粟種	6되	白木 7疋
49	高宗	7(1870)	庚午	3/11	姜元涌	玄氏	流來衿得	凶年	坪垆池員	皮牟	10말2되	白木 20疋
50	高宗	13(1876)	丙子	3/28	吳召史	玄氏	買得田	緊有用處	龍短下院	粟種	8되	正木 4疋2尺
51	高宗	13(1876)	丙子	4/9	姜弼得	玄氏	相換田	凶年	軍心伊水	皮牟	3말	白木 9疋
52	高宗	13(1876)	丙子	7/20	姜應老	玄氏	流來門路	要用所致	後童山員	皮牟	1말	白木 2疋
53	高宗	14(1877)	丁丑	1/28	洪龍夫	玄氏	流來田	要用所致	長 Y 員	粟種	1되	白木 30尺
54	建陽	1(1896)	丙申	12/28	姜承周	玄氏	掃祭田	相換	亭子于領	皮牟	18말	錢文 485兩
55	光武	10(1906)	丙午	4/21	姜爽周	高元周	傳來田	切有用處	吾老穴田	皮牟	8말	錢文 350兩
56	隆熙	1(1907)	丁未	10/11	梁宸杓	姜南彬	流來田	有用處	皮文岳員	粟種	1되	錢文 20兩

토지의 매매는 朝鮮朝 宣祖 30년(1597)부터 純宗 원년(1907)까지 한두 건 이상으로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 전체 56건 중 高宗 때가 17건(建陽, 光武 각 1건 포함)으로 가장 많고, 肅宗 때가 7건, 英祖·正祖·哲宗 때가 각 5건, 仁祖·顯宗 때가 각 4건, 宣祖·孝宗·純祖 때가 각 2건, 光海君·憲宗·純宗 때가 각 1건의 순으로 매매되었다. 이는 조선조 후기로 넘어 가면서 토지의 매매가 그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文記 56건 중 38건(玄氏가 매수한 것 17건 포함)만이 姜氏宅에서 매수한 것이고, 나머지 18건은 다른 姓氏가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토지를 매매할 때, 本文記를 넘겨 주는(本文記并以) 관례에 따라 강씨댁이 他姓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전에 작성되었던 본문기를 가급적 넘겨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매매 시기는 1년 내내 계속되고 있으나 특히 11월(여기서는 陰曆을 말함)부터 이듬해 5월까지의 한 달에 평균 6건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3월이 가장 많다. 이러한 현상은 가을 수확기가 끝나는 仲冬(11월)에서 이듬해 보리 수확이 이루어지는 仲夏(5월)까지인데, 이는 토지 매매의 시기가 農閑期나 春窮期에 이루어졌음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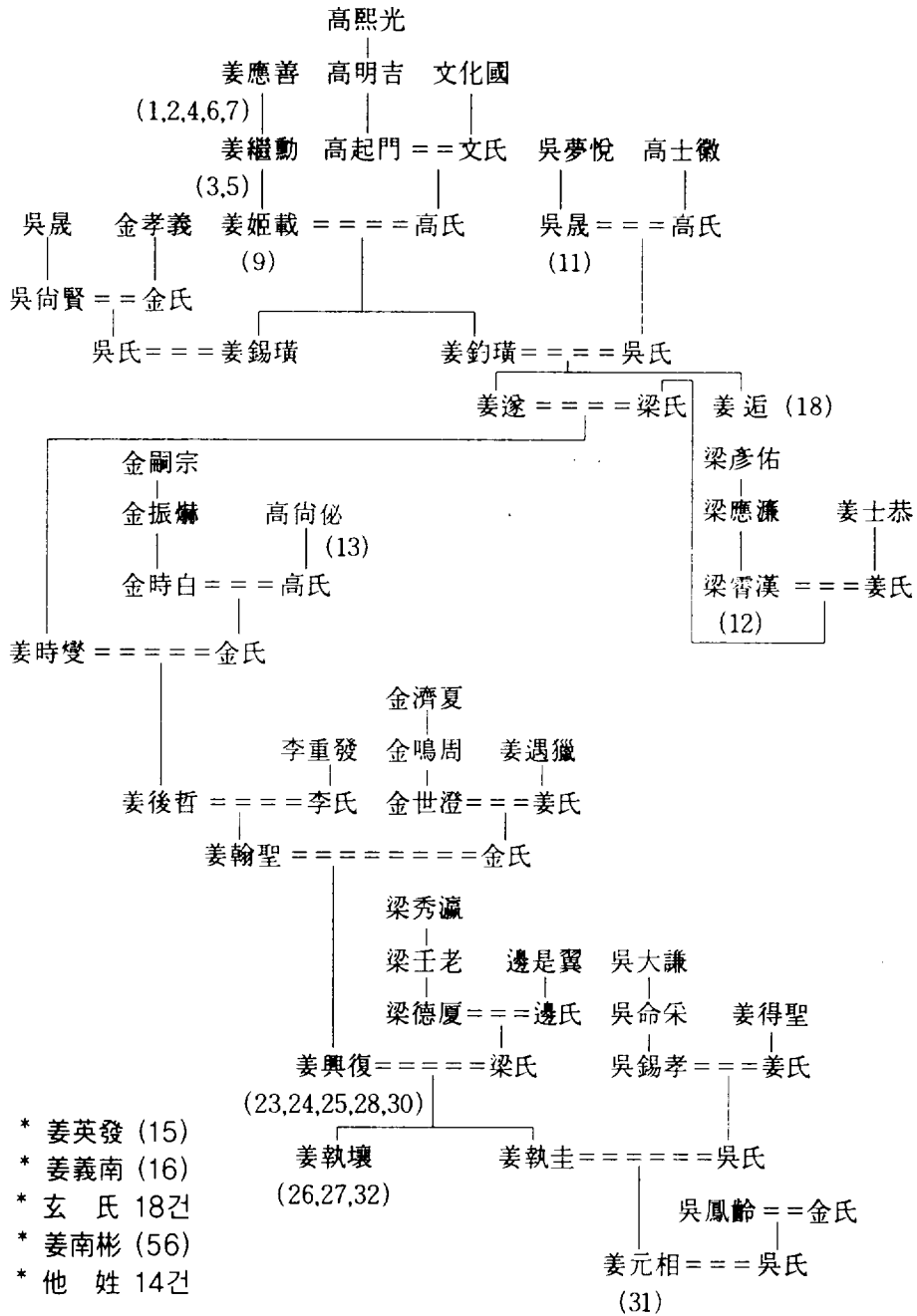
전답의 取得經緯를 살펴 보면, 첫째, 買得田(自起買得田으로 표기된 1건 포

함)이 20건으로 가장 많다. 둘째, 祖上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밭이다. 문기상의 표현은 祖上傳來라 한 것이 9건으로 가장 많고, 단순히 流來田(3건), 傳來田(1건)이라 표기한 것이 있는가 하면 流來門路(속칭 올레, 1건), 掃祭田(1건) 등이 있었고, 門中許給(1건), 外家傳來(1건)라 한 것도 있다. 총 17건이다. 셋째, 깃득[衿得] 또는 傳得으로, 여기에는 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은 것과 처가에서 처 몫으로 받은 것이 있다. 전자는 父前衿得(2건), 父前傳得(1건), 父主衿得(1건), 衿得田(3건), 衿得家基(1건), 流來衿得(1건) 등으로 문기상에 표기되어 있고, 후자는 妻邊傳來(1건), 妻邊傳得(1건), 妻邊衿得(1건), 妻衿得畓(1건), 妻家流來(1건)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총 14건이다. 넷째, 相換한 밭이 2건이다. 다섯째, 論賞(1건), 紛失한 農牛價(1건), 未詳(1건) 등이었다.

토지를 방매하는 사유는 첫째, 要用所致가 총 24건으로 가장 많은데, 개중에는 緊有用處(2), 切有用處(1), 有用處(1) 등으로 표기된 것도 있었다. 방매사유가 가장 애매한 경우이나 필요에 따라 때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貧寒(生理爲難 1건, 貧寒所致 1건)과 凶年(15건)으로 문기상에 표기된 것이 17건이다. 셋째, 同色馬(2건), 故失馬(1건) 등 말[馬]과 관련된 것이 3건이다. 넷째, 口食還上(1건), 還上備納(1건) 등으로 표기된 還穀과 관련된 것이 2건이다. 다섯째, 喪債(1건)와 負債(1건)와 관련된 것이 2건이다. 여섯째, 犬食雌馬(1건), 耕作不便(1건), 農牛紛失과 마련(2건), 八字奇薄(1건), 皮物納付(1건), 還退(1건), 相換(1건) 등이 있었다.

作物은 皮牟(牟種, 麥種으로도 표기됨) 34필지, 粟種 18필지, 粗種 3필지, 麻子 1필지였다. 價格은 布木으로 표시된 것이 총 39건으로 가장 많다. 명목상으로는 正木 22건, 白木 13건, 木棉 2건, 步木 1건, 回捧木 1건 등의 순으로 표기되어 있다. 牛馬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총 12건이다. 그 중 소(牛)는 6건인데, 雄牛 2건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肥雄牛, 農牛, 卜牛 및 雌牛가 각 1건이며, 말[馬]도 6건인데 이에는 雌馬가 4건, 雄馬가 2건이다. 이외에 棺板(1건)과 粟麥(1건)으로 표기된 것도 있으며, 建陽 이후로는 錢文(3건)으로 표기되어 있어, 제주도에서의 화폐(常平通寶, 葉錢)의 일반적인 통용 시기를 가늠해 볼수 있다. 즉 화폐에 의한 토지매매에 있어서는 『濟州啓錄』道光 26년(憲宗 12, 1846) 5월 초2일자의 狀啓 내용에 의하면, 「本島不用錢貨 代用布木」이라 하여, 貨幣 대신에 베나 무명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高宗代 이후 文記의 경우, 화폐의 使用例가 보이고 있는 것이다.

〈土地買入과 관련된 世系圖〉 ()은 문서번호



- * 姜英發 (15)
- * 姜義南 (16)
- * 玄氏 18건
- * 姜南彬 (56)
- * 他姓 14건